

주주총회소집공고

2010년 3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강 정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전 화) 02-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최 규 설
 (전 화) 02-2073-284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기 정기)

5	4	추천(안)	결						3)				
1 6	2009.12. 18	이사회규정 등 개정(안)	가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석	찬성	찬성	결석	
		2010년 그룹 경영계획(안)	가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0년 지주회사 예산편성(안)	가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 7	2009.12. 31	2010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철회(안)	가 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1) 반대사유 : 유상증자 규모에 대한 견해차이
- 주2) 반대사유 :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반대
- 주3) 반대사유 : 의안에 대한 반대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회	(1월1일~3월26일) 임석식, 정기영 조 담, 김 한 김치중	2009.2. 2	- 제1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08년도 감사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 ○ 2009년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안) ○ KB금융그룹 주요소송 현황 보고 ○ 역외펀드 선물환 관련 보고 ○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보고 ○ 2008년도 감사위원회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

감사위원 회 (3월27일~) 김치중, 조 담 임석식, 변보경 강찬수	2009.3. 5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09 사업연도 계열사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 Comfort Letter 발행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 사전승인 ○ Comfort Letter 발행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 사전승인 ○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감독정책(Policy) 운영(안) ○ 감사보고서의 확정 ○ 주주총회 감사보고(안) [심의사항] ○ 200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0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200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보고 ○ 200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결과 보고 ○ 2008 회계연도 K-GAAP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 2008 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 정관 변경(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2008 회계연도 K-GAAP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2009.3. 27	- 제3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가결
	2009.5. 22	- 제4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08 회계연도 US-GAAP 재무보고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 2008 회계연도 US-GAAP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US-GAAP Conversion에 대한 SOX 404 감사 결과 포함) ○ 2009년도 1/4분기 외부감사인의 분기 검토 결과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보고	-
	2009.6. 18	- 제5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보조조직 개편 권고(안) ○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심의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가결 가결
	2009.7. 10	- 제6차 위원회 [결의사항] ○ Comfort Letter 발행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에 대한 사전승인 [심의사항] ○ 공시 실행 현황 ○ 2008 회계연도 US-GAAP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2009년도 상반기 검사업무 추진실적	가결

		[보고사항] ○ KB국민은행 차입약정위배 처리결과 및 내부통제 개선조치 보고	
2009.8. 13	- 제7차 위원회 [심의사항] ○ 2009 회계연도 상반기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 결과 ○ 2009 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검사 결과 [보고사항] ○ 역외펀드 선물환 관련 현황 보고	-	
2009.11 .13	- 제8차 위원회 [결의사항] ○ 감사담당 집행임원 및 감사부장 임면에 대한 동의 [심의사항] ○ 2009 회계연도 3/4분기 외부감사인의 분기검토 결과 [보고사항] ○ KB금융그룹 주요소송 현황 보고	가결	
2009.12 .18	- 제9차 위원회 [결의사항] ○ 주주총회 감사보고(안) ○ 2010년 감사업무 계획(안) [심의사항] ○ 이사 선임의 건 ○ 공시 실행 현황 ○ 2009 회계연도 US-GAAP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보고사항] ○ IFRS도입프로젝트 2단계 경과 및 3단계 추진계획 보고 ○ 2009년 외부감사인과의 용역계약 사전승인 위임에 대한 결과보고 ○ 감사위원회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가결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회운영 위원회	(1월1일~3월26일) 정기영, 조 담 임석식, 변보경 김치중, 황영기	2009.2. 2	- 제1차 위원회 [심의사항] ○ 정관 변경(안) ○ 2009년 이사회 등 연간 일정(안) [보고사항] ○ 2008년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결과 보고	-
	(3월27일~9월 28일) 조 담, 변보경 함상문, 김치중 강찬수, 황영기			

(9월29일~) 조 담, 변보경 함상문, 김치중 강찬수, 강정원	2009.6. 26	- 제2차 위원회 [심의사항] ○ 이사회규정 등 개정(안) ○ 2009년 3/4분기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안)	-
	2009.10. .29	- 제3차 위원회 [심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및 이사보수규정 개정(안)	-
	2009.11. .27	- 제4차 위원회 [심의사항] ○ 이사회규정 등 개정(안) ○ 2010년 1/4분기 이사회 및 위원회 일정(안)	-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경영전략 위원회 (1월1일~3월26일) 변보경, 정기영 김 한, 강찬수 Jacques Kemp 황영기, 강정원 (3월27일~9월 28일) 함상문 Jacques Kemp 김 한, 조재목 황영기, 강정원 (9월29일~) 함상문 Jacques Kemp 김 한, 조재목 강정원	2009.2.2	- 제1차 위원회 [보고사항] ○ 2008년도 배당(안) 검토	-	
	2009.3.6	- 제2차 위원회 [보고사항] ○ BCC 투자현황 및 손자회사 편입(안) 검토 ○ 캄보디아 'Khmer Union Bank' 손자회사 편입 ○ KB생명의 자회사 편입(안)	-	
	2009.5.1 4	- 제3차 위원회 [보고사항] ○ Burrill-KB Korea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손자회사 편입 검토 ○ 2009.1Q 경쟁금융그룹 경영성과 분석 ○ 비상경영계획 관련 핵심관리지표 모니터링 결과	-	
	2009.7.2 8	- 제4차 위원회 [보고사항] ○ KB금융그룹 증권업 중장기 성장전략	-	
	2009.12. 4	- 제5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10년 그룹 경영계획(안) ○ 2010년 지주회사 예산편성(안)	가결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1월1일~3월26일) 조 담, 임석식 Jacques Kemp	2009.2.2 3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 트레이딩 정책지침 제정(안) [보고사항]	가결	

리스크관리 위원회	함상문, 김중희 (3월27일~6월30일) 강찬수, 조 담 Jacques Ke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현황 및 대손충당금 정책 및 대응방안 ○ KB국민은행 여신포트폴리오 변동분석 및 관리대책 ○ KB국민은행 신용카드부문 리스크 현황 및 관리대책 ○ 카자흐스탄 Country Risk 분석 ○ KB투자증권 2009년 상반기 PF자산 및 유동성 관리 대책 ○ KB국민은행 환경변화에 따른 신용평가 모형의 영향력 검토 ○ 개별대출 취급시 RAROC 활용 검토 ○ 그룹 운영리스크관련 보험 현황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임석식, 함상문 김중희 (7월1일~) 강찬수, 조 담 Jacques Kemp	2009.5.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위원회 [보고사항] ○ 계열사 리스크관리 개선현황 및 향후 계획 ○ 그룹 위기상황분석 결과 보고 ○ 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및 대손충당금 현황 ○ KB투자증권 PF관련 자산 관리 및 개선 현황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KB투자증권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보고 	-
	함상문, 김중희	2009.8.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위원회 [보고사항] ○ 장외파생상품 Counterparty 리스크관리 제도 개선 ○ 커버드 본드 발행 결과 보고 ○ BCC 리스크 현황 보고 ○ 그룹 리스크관리 추진 실적 보고 ○ KB생명보험 리스크관리 Master Plan ○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
	리스크관리 위원회		2009.1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위원회 [결의사항] ○ 2010년 그룹 Risk Appetite 설정(안) ○ 2010년 그룹 경제적자본 한도 설정(안) [보고사항] ○ 2010년 그룹 리스크관리 전략(안) ○ KB국민은행의 Counterparty Risk 관리체제 개선 ○ BCC 리스크현황 보고 ○ 그룹 리스크 현황 보고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평가보상 위원회	(1월1일~3월26일) 김치중, 변보경 함상문, 강찬수	200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위원회 [결의사항] ○ 상임이사 장기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안) ※보류사유 : 평가지표 제고 ○ 2009년 상임이사 경영성과 평가 세부기준(안) ※보류사유 : 평가지표 제고 ○ 2008년 은행장 경영성과 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보류 보류 가결

(3월27일~7월9일) 변보경, 김 한 김치중, 조재목 (7월10일~) 변보경, 임석식 김 한, 김치중 조재목		○ 2008년 회장, 사장 단기성과급 지급(안) ○ 사외이사후보군 제공 결의(안) [보고사항] ○ 사외이사후보군관련 외부 Search Firm 제안서 주요내용 ○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자율기준(안)'관련 보고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이사보수한도(안)	가결 가결
	2009.6.1 8	- 제2차 위원회 [결의사항] ○ 상임이사 경영성과 평가기준 변경(안) ※보류사유: 평가지표 재검토 [보고사항] ○ 부회장(은행장) 임금체계에 대한 보고	보류
	2009.6.2 6	- 제3차 위원회 [결의사항] ○ 상임이사 경영성과 평가기준 변경(안)	가결
	2009.8.2 1	- 제4차 위원회 [보고사항] ○ 2009년도 상반기 경영성과 Mid-term Review	-
	2009.10. 26	- 제5차 위원회 [결의사항] ○ 회장후보군 자격기준(안) [심의사항] ○ 대표이사부회장 관련 사항 ○ Search Firm 선정	가결
	2009.11. 2	- 제6차 위원회 [결의사항] ○ 회장후보군 제공결의(안) ○ 이사 경영성과 평가 및 단기성과급 지급(안) ○ 퇴직금 지급(안)	가결 가결 가결

※ 2009년도 KB금융지주 이사회활동 자체 평가결과

- 종합평점 : 7.0점(10점 만점)
 - 이사회 구성 및 효율성 : 7.3점
 - 이사회 기능과 역할 : 7.0점
 - 이사회 책임 : 5.9점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 7.8점

○ KB금융지주 이사회는 2009년도 이사회 활동을 4개 부문 20개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체 평가한 결과, 이사회 구성 및 효율성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토의 분위기 보장', '이사회 규모의 적정성' 등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아 활발한 이사회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사회 논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 기능과 역할 부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과 '경영진에 대한 공정한 평가보상' 항목이 좋은 점수를 받음.
-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관계 부문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재무보고서의 충실성'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9	5,000	573	63.7	-

* 해당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상임이사 보수를 포함한 승인금액임

* 1인당 평균지급액 : 지급총액/인원수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2차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도 유가안정,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등 적극적인 정책 실행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초기국면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나, 당분간은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세계적 저금리 정책 공조 및 경기침체,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저하로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금리 격차는 확대될 것이며 미국 금융시장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에서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두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부실자산이 양산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이 국유화 되거나 우량 금융회사로 매각되고 금융공기업은 민영화되는 과정을 겪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규제방식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판매권유자 제도 등 상품 유통채널이 확대될 것입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의 금융투자업의 이업종간 겸영이 확대되고 대형화, 겸업화를 위한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간 인수, 합병이 활성화되며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의 3대 축으로 재편될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금융그룹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규제 및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규제개혁'과 '적정 수준의 규제'가 병행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점 공동이용 규제 완화, 고객정보 공유범위 확대, 복합금융상품 등이 허용되고 금융상품 전문판매업,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같은 신규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장에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업의 경우 2009년 4월부터 리스크기준자기자본(RBC) 제도가 병행 시행되고 있고, 증권업은 리스크중심 감독(RBS) 체제를 구축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건전성 규제는 300%에서 200%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리스크관리 및 건전성 규제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및 판매책임이 강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보호제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정책들이 시행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금융그룹들은 리스크 관리와 내실경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비유기적 성장을 통한 성장기반 확대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는 은행부문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금융업 전반의 M&A Initiative 확보에 주력하되 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룹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각 계열사의 업무 전문성 및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계열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고객정보를 통합하는 그룹 "CRM마트" 구축을 통해 고객에 대한 Single-View 확보는 물론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영역에 걸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계열사간 원활한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그룹 차원의 표준화된 교차판매, 소개·공동영업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상품이 연계된 복합상품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금융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BiB/BwB 등의 복합점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KB금융그룹 고객이라면 누구나 은행, 증권, 보험의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KB스타클럽제도를 2010년 2월 시행하였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구매 프로세스를 통합하고, 구매물량을 집중화 함으로써 단순물량 통합에 따른 일회성 비용절감을 넘어 그룹 전체 구매역량향상을 통한 상시 비용절감 체계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금융위기가 실물로 전이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의 환경 속에서 2008년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은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네트워크 확충, 브랜드 파워 강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등 내부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09년도 당기순이익은 5,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조원(71.2%)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Credit Cost 증가와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익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4분기의 이자부문 이익은 1.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3십억원(17.8%) 상승하였고 NIM은 2.61%로 전분기 대비 41bp 상승하였습니다. 실적신탁 및 관리자산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전년말 대비 3.9조원(1.2%) 감소한 316조원으로, 은행부문 자산은 259.5조원(연결기준), 비은행부문 자산은 5.5조원 규모이며 실적신탁 및 관리자산은 51조원입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당사 외에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이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와 계열사 구조가 상이하고 기타 금융기관과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시장점유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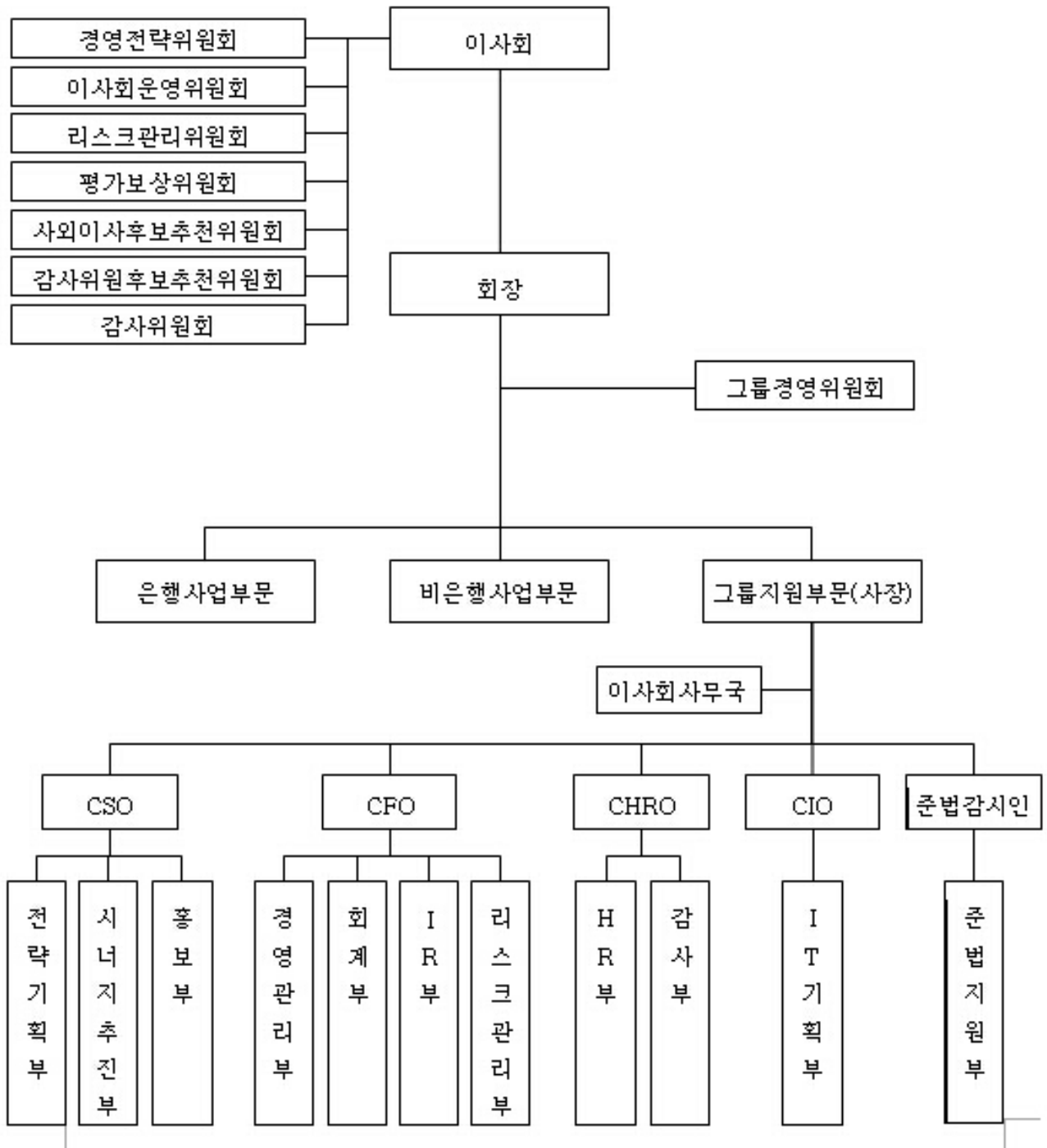
(3) 시장의 특성

상기 "1.사업의 개요-가. 업계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내용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2 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2 기	제 1 기
[자 산]		
I. 현금및예치금	845,366	1,849
1. 예치금	845,366	1,849
II. 유가증권	17,612,122	16,345,052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7,612,122	16,345,052
III. 대출채권	169,150	199,000
(대손충당금)	(850)	(1,000)
1. 대출금	170,000	200,000
IV. 유형자산	1,718	3,214
1. 업무용동산	3,796	3,583
(감가상각누계액)	(2,078)	(369)

V. 기타자산	35,108	18,904
1. 예치보증금	22,671	13,825
2. 미수금	-	2
3. 미수수익	9,547	1,225
4. 선급비용	343	1,607
5. 무형자산	2,509	2,009
6. 잡자산	38	236
자산총계	18,663,464	16,568,019
[부 채]		
I. 차입부채	798,421	730,572
1. 차입금	-	232,000
2. 사채	800,000	5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579)	(1,428)
II. 기타부채	13,413	8,836
1. 미지급금	199	226
2. 미지급비용	5,314	2,629
3. 이연법인세부채	6,247	4,649
4. 수입세세	203	171
5. 퇴직급여충당부채	4,709	3,346
(퇴직연금운용자산)	(3,296)	(2,185)
6. 잡부채	37	-
부채총계	811,834	739,408
[자 본]		
I. 자본금	1,931,758	1,781,758
1. 보통주자본금	1,931,758	1,781,758
II. 자본잉여금	16,428,852	15,473,511
1. 주식발행초과금	12,220,754	11,265,413
2.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	4,208,098	4,208,098
III. 자본조정	(2,918,990)	(3,145,102)

1. 지분법자본조정변동	(2,918,990)	(3,145,102)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32,279	1,087,503
1. 지분법자본변동	1,235,619	1,094,351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340)	(6,848)
V. 이익잉여금	1,177,731	630,941
1. 법정적립금	61,200	-
2. 임의적립금	568,000	-
3. 미처분이익잉여금	548,531	630,941
자본총계	17,851,630	15,828,611
부채와자본총계	18,663,464	16,568,01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2 기	제 1 기
I. 영업수익	696,712	635,268
1. 지분법이익	677,107	633,981
2. 이자수익	19,455	1,287
가. 예치금이자	9,879	689
나. 대출채권이자	9,576	598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50	-
가. 대손충당금환입액	150	-
II. 영업비용	154,819	23,197
1. 지분법손실	64,482	10,096
2. 이자비용	55,556	3,063
가. 차입금이자	5,499	990
나. 사채이자	50,057	2,073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	1,000
가. 대손상각비	-	1,000
4. 수수료비용	7,209	2,270
5. 판매비와 관리비	27,572	6,768
가. 급여	15,136	3,093
나. 퇴직급여	1,780	347
다. 복리후생비	2,067	446
라. 임차료	1,006	234
마. 감가상각비	1,709	369
바. 무형자산상각비	749	73
사. 세금과공과	148	28
아. 광고선전비	402	902
자. 경상개발비	490	7
차. 기타	4,085	1,269
III. 영업이익	541,893	612,071
IV. 영업외수익	830	23
1. 기타영업외수익	830	23
V. 영업외비용	2	-
1. 기타영업외비용	2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42,721	612,094
VII. 법인세비용	2,903	167
VIII. 당기순이익	539,818	611,927
IX.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659원	2,078원
2. 희석주당순이익	1,659원	2,078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2 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처분예정일 : 2010년 3월 26일)

제 1 기 2008년 9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처분확정일 : 2009년 3월 27일)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2기	제 1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48,531	630,94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41	-
2. 지분법적용에 따른 잉여금 변동	6,972	19,014
3. 당기순이익	539,818	611,927
II. 이익잉여금처분액	546,879	629,200
1. 이익준비금	53,982	61,200
2. 임의적립금	414,000	568,000
3. 배당금	78,897	-
가. 현금배당	78,897	-
- 보통주당배당금(율)		
제2기 : 230원(4.6%)		
제1기 : 무배당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52	1,74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 (생략)	제 1 조 (현행과 같음)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u>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u></p> <p>3. (생략)</p> <p>4. <u>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u></p> <p>(호 신설)</p> <p>5. <u>자회사 등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등의 대여 및 제공 업무</u></p> <p>6. 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p> <p>7.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p>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자회사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금지원</u></p> <p>3. (현행과 같음)</p> <p>4. <u>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u></p> <p>5. <u>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u></p> <p>6. <u>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u></p> <p>7. 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p> <p>8.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p>	<p>- 용어에 대한 근거 법령 표기</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호 제하</p> <p>- 호 제하</p>
<p>제 3 조 ~ 제 15 조 (생략)</p>	<p>제 3 조 ~ 제 15 조 (현행과 같음)</p>	
<p>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생략)</p> <p>② <u>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u></p> <p>③ (생략)</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u>유가증권</u>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u>증권</u>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 명의개서대리인 관련 공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제 17 조 ~ 제 24 조 (생략)</p>	<p>제 17 조 ~ 제 24 조 (현행과 같음)</p>	
<p>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u>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 25 조(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u>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제 26 조 ~ 제 29 조 (생략)</p>	<p>제 26 조 ~ 제 29 조 (현행과 같음)</p>	
<p>제 30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p> <p>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u>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 30 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p> <p>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u>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제 31 조 ~ 제 36 조 (생략)</p>	<p>제 31 조 ~ 제 36 조 (현행과 같음)</p>	
<p>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항 신설)</p>	<p>제 37 조(사외이사의 자격기준)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u></p> <p>1.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p>

<p>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p> <p>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p> <p>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p> <p>4. 10년 이상 금융업무관련 기관에 종사한 자 (호 신 설)</p> <p>(호 신 설)</p> <p>-</p> <p>-</p> <p>-</p> <p>(호 신 설)</p> <p>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p> <p>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p> <p>③ (생 략)</p> <p>(항 신 설)</p> <p>(항 신 설)</p> <p>(항 신 설)</p>	<p>는 자</p> <p>2.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자</p> <p>② 이 회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후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p> <p>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3.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4. 10년 이상 금융회사에 종사한 자</p> <p>5.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해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8.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p> <p>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및 제4항의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연임시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p> <p>⑤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임기연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임기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선</p>	<p>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p>
--	---	--

<p>(항 신 설)</p> <p>제 39 조 ~ 제 42 조 (생 략)</p> <p>제 43 조(이사회 의 구성 과 소 집) ① (생 략)</p> <p>② 이사회 의 장 은 이사 중 에서 이사회 에서 호 선 에 의 해 선 입 한 다.</p> <p>③ ~ ⑤ (생 략)</p> <p>제 44 조 ~ 제 53 조 (생 략)</p> <p>제 5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 의 대 표 이 사 는 정 기 주 주 총 회 회 일 의 6 주 간 전 에 다음 각 호 의 서 류 와 그 부 속 명 세 서 및 영 업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감 사 위 원 회 의 감 사 를 받 아 야 하 며, 다음 각 호 의 서 류 와 영 업 보 고 서 를 정 기 총 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p> <p>1. 대 차 대 조 표</p> <p>2 ~ 3. (생 략)</p> <p>② ~ ③ (생 략)</p> <p>④ 대 표 이 사 는 제 1 항 각 호 의 서 류 에 대 한 주 주 총 회 의 승 인 을 얻 은 때 에 는 결 산 일 로 부 터 3 월 이 내 에 대 차 대 조 표, 손 익 계 산 서 및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언 결 재 무 제 표 중 금 융 위 원 회 가 정 하 는 서 류 와 외 부 감 사 인 의 감 사 의 견 을 공 고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그 공 고 방 법 은 제 4 조 에 도 불 구 하 고 금 융 지 주 회 사 법 제 55 조 의 2 의 규 정 으 리 정 하 고 있 는 전 자 문 서 의 방 법 에 의 할 수 있 다.</p> <p>제 55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 는 감 사 위 원 회 의 승 인 을 얻 어 외 부 감 사 인 을 선 입 하 며, 선 입 후 최 초 로 소 집 되 는 정 기 주 주 총 회 에 그 사 실 을 보 고 한 다.</p> <p>제 56 조 ~ 제 61 조 (생 략)</p> <p>(부 칙 신 설)</p>	<p>임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재임하는 것으로 본다.</p> <p>⑦ 제5항의 사외이사 재임기간은 이 회사의 자회사등의 사외이사(퇴임 후 2년 이내에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에 한한다)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이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을 때 편입된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는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p> <p>제 39 조 ~ 제 42 조 (현행과 같음)</p> <p>제 43 조(이사회 의 구성 과 소 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이사회 는 매 년 이사회 가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사 외 이 사 중 에서 이사회 의 장 을 선 입 한 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 44 조 ~ 제 53 조 (현행과 같음)</p> <p>제 54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 의 대 표 이 사 는 정 기 주 주 총 회 회 일 의 6 주 간 전 에 다음 각 호 의 서 류 와 그 부 속 명 세 서 및 영 업 보 고 서 를 작 성 하 여 감 사 위 원 회 의 감 사 를 받 아 야 하 며, 다음 각 호 의 서 류 와 영 업 보 고 서 를 정 기 총 회 에 제 출 하 여 야 한 다.</p> <p>1. 대 차 대 조 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대 표 이 사 는 제 1 항 각 호 의 서 류 에 대 한 주 주 총 회 의 승 인 을 얻 은 때 에 는 결 산 일 로 부 터 3 월 이 내 에 대 차 대 조 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무상태표), 손 익 계 산 서 및 주 식 회 사 의 외 부 감 사 에 관 한 법 률 에 의 한 언 결 재 무 제 표 중 금 융 위 원 회 가 정 하 는 서 류 와 외 부 감 사 인 의 감 사 의 견 을 공 고 하 여 야 한 다. 이 경 우 그 공 고 방 법 은 제 4 조 에 도 불 구 하 고 금 융 지 주 회 사 법 제 55 조 의 2 의 규 정 으 리 정 하 고 있 는 전 자 문 서 의 방 법 에 의 할 수 있 다.</p> <p>제 55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회사 는 감 사 위 원 회 의 승 인 을 얻 어 외 부 감 사 인 을 선 입 하 며, 그 사 실 을 선 입 한 사 업 년 도 중 에 소 집 되 는 정 기 주 주 총 회 에 보 고 하 거 나, 최 근 주 주 명 부 폐 쇄 의 주 주 에 게 서 면 이 나 전 자 문 서 에 의 하 여 통 지 하 거 나 또 는 감 사 대 상 사 업 연 도 종 료 일 까 지 회 사 의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에 공 고 하 여 야 한 다.</p> <p>제 56 조 ~ 제 61 조 (현행과 같음)</p>	<p>등</p> <p>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p> <p>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p> <p>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p> <p>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p>- 법령 변경 내용 반영</p>
---	--	--

	<p>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03.26.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은 2010.05.29.부터 시행한다.</p> <p>제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제 38조 제5항에 따른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하여도 제38조 제6항, 제7항을 적용한다.</p>	<p>- 상법 시행일 (2010.05.29)에 따라 관련 조항의 경과규정을 둠</p> <p>- 전국은행연합회의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반영</p>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승의	1955년 6월 26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경제	1939년 1월 30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영남	1957년 9월 3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Jacques P.M. Kemp	1949년 5월 15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주요경력	최종학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고승의 (신임) 임기 2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 회계학회 이사 - 한국 회계학회 재무회계분과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영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이경제 (신임) 임기 2년	-	-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 한국은행 이사, 감사 - 금융결제원 원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뉴욕대학교 경제학 석사 - 국민대학교 경제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이영남 (신임) 임기 2년	이지디지털 대표이사 사장	-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외이사	- 동부대학교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해당사항 없음
Jacques P.M. Kemp (중임) 임기 1년	-	- Chairman, ING Bank International - Global head of e-Business, ING Group - CEO, ING Asia/Pacific Insurance - Vice Chairman, ING Asia/Pacific for Insurance/Investment, Amsterdam	- Higher Economic School, Rotterdam - International Senior Management Program at Harvard Univ. - MBA, Univ. of Chicago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찬수	1961년 11월 23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고승의	1955년 6월 26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경제	1939년 1월 30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함상문	1954년 2월 2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Jacques P.M. Kemp	1949년 5월 15일	사외이사후보자	해당사항 없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주요경력	최종학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강찬수	Kang &	- BT Wolfensohn 상무이사	-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	해당사항 없음

(중임) 임기 1년	Company 대표이사 회장	- 서울증권 대표이사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MBA	
고승의 (신임) 임기 1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 회계학회 이사 - 한국 회계학회 재무회계분과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경영학 석사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영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이경제 (신임) 임기 1년	-	- 은행감독원 부원장보 - 한국은행 이사, 감사 - 금융결제원 원장 -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미국 NewYork Univ. 경제학 석사 - 국민대학교 경제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함상문 (신임) 임기 1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경제학/수학 학사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석사 -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해당사항 없음
Jacques P.M. Kemp (신임) 임기1년	-	- Chairman, ING Bank International - Global head of e-Business, ING Group - CEO, ING Asia/Pacific Insurance - Vice Chairman, ING Asia/Pacific for Insurance/Investment, Amsterdam	- Higher Economic School, Rotterdam - International Senior Management Program at Harvard Univ. - MBA, Univ. of Chicago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2명(9)	11명(9)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제2기(2009회계연도) 이사 전원에 대한 연간보수한도는 금50억원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와 별도로 이사의 임기에 걸쳐 부여하는 장기인센티브로서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서 부여하는 경우, 2008년 9월 29일부터 2011년 9월	제3기(2010회계연도) 이사 전원에 대한 연간보수한도는 금50억원으로 하며, 지급 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한다. 이와 별도로 이사의 임기에 걸쳐 부여하는 장기인센티브로서 자사주 또는 그 가액을 보수로서 부

	<p>28일까지의 기간동안 총 250,000주를 한도로 부여 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p>	<p>여하는 경우, 2009년 9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의 기간동안 총 250,000주를 한도로 부여 하되, 부여 및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이사회에 위임한다.</p>
--	---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